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 마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86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 마련	3
2. 관계기관 의견	11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11.

(3) 회 부 일 : 2025. 8. 1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
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
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
12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2조제3항 신설), 대통령이 재직 중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임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임명일로부터 6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생략)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 ----- ---. <u>다만, 대통령이 재직 중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현행법상 헌법기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

현행 「대한민국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헌법재판관 임기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참고로, 「대한민국헌법」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6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헌법기관장 임기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대법원>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원>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현황

역대 헌법재판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초대 헌법재판소장부터 제4대 헌법재판소장까지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의 임기가 개시되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6년인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제5대 헌법재판소장부터 제8대 헌법재판소장까지는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6년) 범위 내에서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 시기에 따라 임기가 달랐던 점을 살펴볼 수 있음.

[역대 헌법재판소장 현황]

구분	직 위	성 명	재임기간	비고
초대	재판소장	조규광	1988. 9. 15. ~ 1994. 9. 14.	
제2대	재판소장	김용준	1994. 9. 15. ~ 2000. 9. 14.	
제3대	재판소장	윤영철	2000. 9. 15. ~ 2006. 9. 14.	
제4대	재판소장	이강국	2007. 1. 22. ~ 2013. 1. 21.	
제5대	재판관/재판소장	박한철	2011. 2. 1. ~ 2017. 1. 31.	재판소장 임명 (2013.4.12.)
제6대	재판관/재판소장	이진성	2012. 9. 20. ~ 2018. 9. 19.	재판소장 임명 (2017.11.24.)
제7대	재판관/재판소장	유남석	2017. 11. 11. ~ 2023. 11. 10.	재판소장 임명 (2018.9.21.)
제8대	재판관/재판소장	이종석	2018. 10. 18. ~ 2024. 10. 17.	재판소장 임명 (2023.11.30.)

자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history.ccourt.go.kr/site/history/03/10301000000002020101203.jsp>) 참조

라. 검토의견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재직 중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도 임명일로부터 6년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재판관 재직 중에 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를 재판소장의 임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전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종료하고 헌법

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보아야 하고,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새로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3항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²⁾,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둘러싼 해석 및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또한, ②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로 하는 경우 소장 임기의 과도한 유동화를 피할 수 없고 이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대표성과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장은 새로이 6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³⁾과

1)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ZZ19076), 2013. 6. 14.

3) 법조신문,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6년으로”, 2015. 4. 24.자 기사

③헌법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⁴⁾,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⁵⁾하도록 함으로써 임명절차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도 새로이 임명되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바 있음⁶⁾.

반면,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6년)에 종속되어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하면서 소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의

4)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5)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6) 김경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6집제4호, 2008. 6.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이 된 자의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부 구성원으로서 재판관들 중 1인에 해당하므로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그의 소장임기는 재판관의 잔여임기임을 전제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입장임⁷⁾.

특히, ^②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법률에 별도로 명문화하는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음⁸⁾.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의안번호: zz19076)』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헌법재판소장의 안정적인 재판부 운영을 위하여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6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법원행정처는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2429호)에서 헌법의 문언, 체계,

7) 정태호,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167면.

8) 정태호,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168면, 조규범, “헌법재판소장 임기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6년 11월 8일.

학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현행 헌법의 해석상 재판관 재직 중 헌법 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 그 임기는 재판관 잔여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해결책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 법률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 관계기관 의견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임기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같이 헌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로써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과 분쟁을 종식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중임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항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